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515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법률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817	유동수의원 등 10인	2025. 10. 30.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25. 11. 24)
				소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24)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2214345	이인영의원 등 10인	2025. 11. 18.	소위원회 직접회부(2025. 11. 24.)	
				소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24)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2215327	김승원의원 등 11인	2025. 12. 17.	소위원회 직접회부(2026. 3. 31.)		
			소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	

나. 제 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1.)는 위 3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 4. 2.)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도 형평성에 관한 우려가 없는 채무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차주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제8장 보칙”으로 한다.

제44조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제7장(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을 신설한다.

제7장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고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2.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매입한 채권의 보전·추심 또는 소각
4. 제1호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자산·소득 등의 재산조사

5. 매입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①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조정기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를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제2조제1호나목의 정보에 한정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4.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생계급여 등 각종 연금·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7.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
9.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 기록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인적사항·소득·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무조정기구의 자료·정보의 수집·제공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3에 따라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조정기구에 요청받은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4. 「국민연금법」 제1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3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8, 제18조의11제6항, 제22조제6항, 제24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

제44조의5(신용정보 등의 제공·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① 채무조정기구는 제44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 등을 제공·수집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료·정보의 제공·수집 사실을 알리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의3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정보를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3. 그 밖에 신용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 · 고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u> <u>2.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u> <u>3. 매입한 채권의 보전 · 추심 또는 소각</u> <u>4. 제1호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자산 · 소득 등의 재산조사</u> <u>5. 매입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u>
<p><u><신 설></u></p>	<p><u>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①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 · 고시된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u></p>

다)은 같은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조정기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를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제2조제1호나목의 정보에 한정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4.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보훈급여 · 생계급여 등 각종 연금 · 보험 · 급여에 관한 자료
 7.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
 9.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 기록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인적사항 · 소득 ·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

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무조정기구의 자료·정보의 수집·제공에 대하여는 제3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3에 따라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조정기구에 요청받은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4. 「국민연금법」 제1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3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8, 제18조의11제6항, 제22조제6항, 제24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

제44조의5(신용정보 등의 제공·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① 채무조정기구는 제44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 등을 제공·수집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료·정보의 제공·수집 사실을 알리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44조의3에 따라 채무조정 기구에 자료·정보를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3. 그 밖에 신용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

제7장 보칙

제8장 보칙